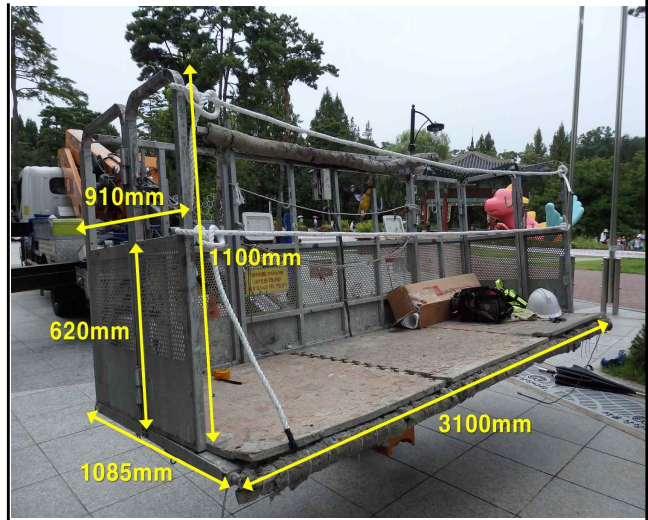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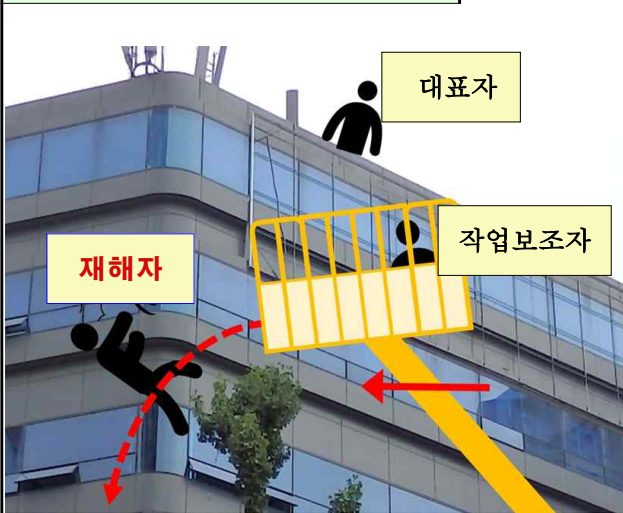


고소작업대에서 광고현수막 설치 작업 중 추락 사망

재해개요

2017년 09월 02일(토) 13:40분경 서울 ○○동 소재 ○○빌딩에서 『○○』 소속의 일용근로자 『○○○(재해자)』가 고소작업대(차량탑재용)에 탑승하여 지상 높이 약28미터 지점인 8층 건물외벽에서 광고 현수막 설치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사망함.

재해관련사진



재해발생원인

- 고소작업차 작업대(※운반구) 안전난간 미설치
 -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대(안전난간 등)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작업대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나 고소작업차 작업대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였음.
- 추락방지용 보호구 미착용
 -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추락방지용 보호구인 안전대·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추락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지 못하였음.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 설치
 -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대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.
 - 안전난간은 작업대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, 최소한 1.0미터 이상 높이의 상부난간대와 0.1미터 이상 높이의 발판 막이판 상부 난간대나 발판 막이판으로부터 0.55미터 이내에 중간대로 구성
 - 안전난간은 가장 불리한 방향과 위치에서 0.5미터 간격으로 작용하는 500N의 집중 하중에 영구 변형 없이 견딜 것[※ N : 질량 1kg의 물체에 작용하여 1m/s²의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의 크기를 1뉴턴(기호·단위: N)이라 한다.]
- 근로자의 추락방지용 보호구 착용 준수
 -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추락방지용 보호구인 안전모·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.